#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_				



제 962 호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차 례

례 조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0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1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2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 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 1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3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4호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29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5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6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 ………… 4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7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4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38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칙 규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94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941호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61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942호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0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단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85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9-882호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90

조	례
---	---

□ 제 명: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4. 30.)으로 우리 구가 4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한시기구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국제도시국)의 존속기한 삭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0호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212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6. 9. 5. 조례 제1212호)	부칙(2016. 9. 5. 조례 제1212호)
제2조(한시기구) 제9조의2에 따른 국제 도시국의 존속기간은 2019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u>&lt;</u> 삭 제>

제962호	인천광역시중구구보	2019. 7. 1. 월요일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리	il and the second secon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4 거가 마련되어, 한시기구인 국제도시:	
│ │		
가. 국제도시국 한시정원(4급	1명)의 존속기한 삭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1호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213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6. 9. 5. 조례 제1213호)	부칙(2016. 9. 5. 조례 제1213호)
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국제도시국의 4급 1명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삭 제>

□제	명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 □ 개정사유

2019. 7. 1. 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상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 상의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개정함

- 1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 ~ 6급 → 장애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2호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 제1조(「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다.
- 제2조(「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다.
- 제3조(「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 문화관 관리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9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다.
- 제4조(「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 중 "1급부터 3급까지로 등록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중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1~3급 등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이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7조(이용사용료의 감면) ①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1

### 제2조「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이용료를 면제한다.  1. ~ 6. (생 략)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 ~ 6. (현행과 같음) 7
( <u>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u> 인 경우 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u>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장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15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u>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u> 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u>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제4조「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② (생 략)	제5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u>1급부터 3급</u> <u>까지로 등록된</u> 장애인 및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7 <u>장애의 정도가</u> <u>심한</u>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제5조「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임장( <u>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 사람</u> 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3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사전 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 주민			
1		- 「국민기초		제4조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중「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제4조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3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 제6조「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 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는 면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 <u>자로서</u>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u>장애인으로서</u>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제7조「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 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u>제1급</u> <u>부터 제3급까지의</u> 장애인	1. (현행과 같음) 2 <u>장애의</u> <u>정도가 심한</u>
3. (생 략) ②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u>장애</u>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장애의</u> <u>정도가 심한</u> 2. ~ 5. (현행과 같음)

## 제9조「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와 보건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민등록상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가 진료(「국민건강 보험법」제41조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에 한한다)및 예방접종,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1~3급 등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가족구성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만3세 이상 만 15세 이하인 자	7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 '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제정사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제5조)
- 나.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 자격(제6조 ~ 제7조)
-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제8조)
- 라.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제13조 ~ 제15조)
- 마.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제1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3호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 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각 행정동 별로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 1. 학교:「교육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 2. 기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 4.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 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

- 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는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 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동장이 정한다.
-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를 1명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필요시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 제14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 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 만료 된 경우 또는 위촉 해제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가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 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 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혐의하여 별도의 혐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3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 동은 구청장이 정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여	거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정사유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 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어린이합창단의 명칭 및 운영 (제2조)
- 나. 어린이합창단의 기능 (제3조)
- 다. 어린이합창단의 구성 (제4조)
- 라. 어린이합창단의 임무 (제5조)
- 마. 어린이합창단 단원 등의 위촉 (제6조)
- 바. 어린이합창단 단원 등의 위촉해제 (제7조)
- 사. 어린이합창단 운영 경비의 지원 (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4호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운영)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2. 공연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정서함양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 (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제5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행사와 공연연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6조(단원 등의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 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른지역에서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끝나 더라도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 2.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 4.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사람
  - 5.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단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제	명 :	인처광역시	중구	곳유재산	과리	주례	일부개정조례
	ο.		0 1	0 11 711 12	2 -	ㅗ메	2 1 / 11 0 - 1 / 11

#### □ 개정사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

나. 그 밖에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28조의1제2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용 · 수익 허가 감면요율 개정(제39조제4항)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9조제3항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준의 구체화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6조제1항)
-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령 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 39조제2항)
- 마. 그 밖에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는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5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를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1제2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3호"로 한다.

제34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제1호 중 "실경작자에게"를 "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로 한다.

- 제39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 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4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자 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 으로 하다.

제4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 자율의"를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이자율의"를 "이자 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 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u>매년 한 차례</u>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제28조의1(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② 영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3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따른다. 제3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8조의1(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제13조제3항제23호 1. (현행과 같음) 제3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ul> <li>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li> <li>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li> <li>2. ~ 5. (생략)</li> <li>제3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li> </ul>	같음) ⑤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 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②「혁신도시 건설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제46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 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42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생 략)	제42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이자율의</u>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다.	② <u>행정안전부장관</u> <u>이자율을 적용한</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의 대부료 이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3

현 행	개 정 안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이</u> <u>자율의</u> 이자를 붙여 납부한다.	<u>행정안전부장관 이</u> <u>자율을 적용한</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u>행정자치부</u> <u>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이자율의</u> 이자 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1. ~ 4. (생 략)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 하는 <u>이자율의</u>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u>행정자치</u>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이자율의</u> 이 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 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③ 행정안전 부장관 이자율을 적 용한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 행	개 정 안
잔액에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	<u>행정안전부장관</u>
하는 <u>이자율의</u>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u>이자율을 적용한</u>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⑤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	
에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 <u>행정안전부장관</u>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이자율을 적용한
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제	제46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1항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u>행정자치부</u>	<u>행정안전부</u>
<u>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이자율의</u> 이자를	<u> 장관</u> <u>이자율을 적용한</u>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교환	②
차금은 10년 이내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케코시키버키키
잔액에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	<u>행정안전부장관</u>
하는 <u>이자율의</u>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u>이자율을 적용한</u>
제6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제6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해 저 아 저 브 자 과
하는 경우에는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u>행정안전부장관</u> 이자율을 적용한
호와 같이 납부한다.	<u> </u>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제70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u>행정안전부장관</u>
율로 한다.	

#### □ 제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

#### □ 개정사유

- 가. 조례의 근거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2015.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주류화'로 바뀌어가는 상황을 반영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 나. 성인지 양성평등의 기본시책마련을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추진 체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제1조 ~ 제5조)
- 나. 양성평등위원회(제6조 ~ 제13조)
- 다.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등(제14조 ~ 제2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6호

####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 :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양성평등. 가족 ·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 제8조(위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다.
  -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참여

- 제1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 운영의 활성화
  -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절 인권보호 및 복지 중진 등

- 제19조(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복지중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 제23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 제2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등 촉진과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에서의 인용)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조례」 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 개정사유

우리 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정의(제2조)
-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제5조 ~ 제7조)
-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제8조 ~ 제17조)
-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제18조 ~ 제26조)
-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제27조 ~ 제30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7호

####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3. 주요 정책과제
- 4. 사업별 추진계획
- 5. 연차별 추진계획
-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 2. 여성의 경제 · 사회 참여 확대
  -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4. 가족 친화 환경 조성
  -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 2. 대중교통의 접근성
  -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4.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여성 · 임산부 · 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실시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 지워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 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18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 협의 · 조정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2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 제2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개최한다.
  -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④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가사) ① 혐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하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한다.
- 제2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구 여성친화 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
  -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 4. 마을단위 성평등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서포터즈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서포터즈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9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 명: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사유

현재 판매소에서 공단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계좌이체로만 구입가능 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여 지정판매소의 현금징수에 대한 불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결제방식으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판매소에서 공단으로부터 종량제봉투 구입 시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사항을 판매소 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현금 및 신용카드 병행 결제가 가능토록 변경함(제 17조제2항)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7조, 제15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338호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완료하는"을 "마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해하거"를 "해치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부여할"을 "줄"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그 구입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 로부터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내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u>완료하는</u>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9. • 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② (생 략)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행정 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5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u>부여할</u> 수있다.	제15조(공급 및 판매) ①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17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종량제	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종량제
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그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	하여금 그 구입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
이체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	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급대행
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구금고 수납대행	<u>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수</u>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해야 한다. 다만,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무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종량제	시간 내「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에서 정하는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	<u>납부하여야한다.</u>
대금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판매한 다음날 오전까지, 판매한 다음날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다음	
날 오전까지 구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u>납입해야 한다.</u>	

ュ	치
TT	-

□ 제 명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 개정사유

2019. 7. 1. 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상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개정함

- 1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940호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람료) ① 구청장은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율은 별도로 정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등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관람료) ①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u>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u> 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 5. (생 략) ②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Box$	제	몃	:	인천광역시	줒구	어린이한	<b>}</b> 창다	설치	및	유영	주례	시행규칙
--------	---	---	---	-------	----	------	-------------	----	---	----	----	------

#### □ 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세부 시행을 위하여 어린이합창 단의 모집절차, 선발방법, 연습, 수당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합창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어린이합창단 모집절차 등 (제3조)
- 나. 어린이합창단 선발방법 (제4조)
- 다. 어린이합창단 단원 등 위촉 및 위촉해제 (제5조)
- 라. 연습 실시 (제6조)
- 마. 수당 지급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941호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는 합창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한다.
- 제3조(모집절차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모원서를, 단원의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가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휘자가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촉이 예정된 날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④ 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제4조(선발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다.

-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5조(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② 구청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항을 그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합창단 위촉위촉 해제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연습은 구 관내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서 주 1회 이상 각각 실시하되지휘자 등은 각각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은 희망지역에 한하여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원 등은 주1회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④ 구청장은 지휘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휘자 등 수당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비고
지급액	1,700,000	1,300,000	1,000,000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월 7회 이하 연습시 10%, 월 5회 이하 연습시 30%를 차감 지급함

#### 【별지 제1호서식】

합창단	: 운영일	<b>[지</b> (제2조 관련)	담당자	담 당 전결	과 장	. 결 재	
일 시		년 월 일( 요	.일) :	~	:		
	지 휘 자		(서명)	)			
가 서 처 히.	반 주 자		(서명)	)			
참석현황	성악코치		(서명)				
	단 원	총 명(참석: 명					
활							
동							
내							
9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 응 모 원 서 (제3조 제2항 관련)

$\overline{}$	*					3.37.3			
,	※응시 번호		응시분야	인천중구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성	한글		생년월일		성별	3.5cm× 4.5cm (반명함판)			
명	한자		직 업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	자택			전 화					
소	E-Mail			휴대전화					
	학력	대 학 교	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 전공:			
	77	대 학 원	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 전공:			
	해당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분야	~							
	주요 경력	~							
	^o ≒								
병	역사항								
첨	부서류	이력서( ), 지 경력증명서(	ト기소개서( ), 수상경	), 학위(졸업 력증명서(	)증명서( ), 성 ), 지휘실적증'	성적증명서( ), 빙자료 ( )			
	위와 같	이 인천중구어	린이합창단 년	간 지휘자 모족 월 일		를 제출합니다.			
				성명 :	()	너명·인)			
인	[천광역/	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	정보 제공 동의	4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장,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인천중구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모집」지원자 심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5년									
	위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인천중구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모집」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단원 지원 신청 에서 제외됩니다.									
동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u>주의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u> .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Ò	มโ	77	성 명		사진(2)
	Ò	/\l	717-	생 년 월 일		3.5cm × 4.5cm
	*	응시			년 월 일	(반명함판) ※ 응시원서와 동일
Ī		응시	분야	인천중구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사진 부착

※ 면접시험 시 본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b>합창단 지원서</b> (제3조 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진 (3.5cm×4.5cm)
연 락 처	집:	(HP:			)	
시설 또는 학교명				학년		
지원부문	① SO. ② MI	E. ③ AL.	선	택곡명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장,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인천중구어린이합창단 단원 모집」지원자 심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5년						
위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인천중구어린이합창단 단원 모집」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단원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별지 제4호서식】

# <u>추 천 서</u> (제3조제3항 관련)

추 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HP)
	추천분야		
	추천사유		

본인은 인천중구어린이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위 대상자를 (반주자, 성악코치)로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서 약 서 (제3조 제4항 관련)

성 명:

주 소: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합창단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위 촉 장 (제5조 제1항 관련)

# 성 명:

귀하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단원) 로(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〇〇〇 (인)

【별지 제7호서식】

## 위촉 해제 통지서 (제5조 제2항 관련)

1. 소 속: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2. 직 위: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단원)

3. 성 명:

4. 위촉 해제 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〇〇〇 (인)

#### 【별지 제8호서식】

# **합창단 위촉·위촉해제 대장** (제5조 제3항 관련) 위촉 해제일 연번 직위 성명 연 락 처 위촉일 비고 생년월일 주 소

#### □ 제 명: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개정사유

- 가. 현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지정판매소 보관용(업체전달용)과 배출시 부착용 등 2개의 부분으로만 구분되어 인쇄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나 영수증과 같이 배출자가 보관할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 나. 우천시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스티커 부착 후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분실되어 스티커 부착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업체에서 수거 거부시 증명할 수 있는 형태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배출시 부착용, 지정판매소 보관용(업체전달용), 배출자 보관용 등 3개의 부분으로 구분 · 제작하여 대형폐기물 수거가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함(별표 3)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942호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기한"을 "발생시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 다)"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초래한"을 "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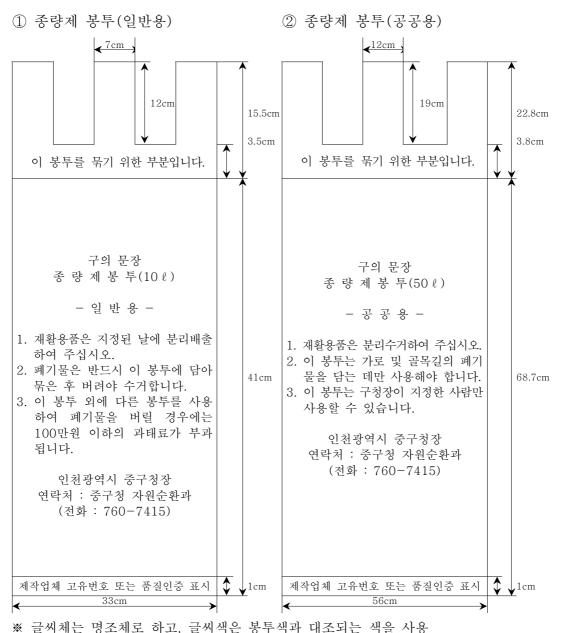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봉투의 사양임

③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

		10cm	
(구문장)	대학	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	4.0
(₩	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cm

(부 착 용)

(₩ 원)

### ■ 대형폐기물 배출 요일

동명	요일	동명	요일
신포동	화, 금	동인천동	화, 금
연안동	수	송월동	화, 금
북성동	화, 금	영종동	화, 금
신흥동	월, 목	영종1동	월, 목
도원동	월, 목	운서동	수, 토
율목동	월, 목	용유동	화

배출 날짜	배출 주소	
일련 번호	배출 품목	

9.3 cm

바코드

###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상단에 대형폐기물 부착용 스티커를 붙이시고, 지정된 동별 수거요일 전날까지 문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장소가 다르거나, 스티커 가격차이 등으로 수거가 지연될 수 있으며, 배출 취소 시 원본(배출자보관용, 부착용 둘 다) 없이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 대상이므로 환경부(☎1599-0903)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불편사항문의: 중구청 자원순환과 ☎ 032)760-7415
    - \* 수거관련문의: 수거대행업체 삼원환경 ☎ 032)820-7329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구문장) **대형페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 보관용)

바코드

(₩ 원)

4.6 cm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토지·건물 등의 청결의무)「인천 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란 인천 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토지·건물 등의 청결의무)
<ol> <li>토지·건물 등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u>야기한</u> 경우</li> <li>(생 략)</li> </ol>	1 <u>발생시킨</u>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 ①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 ① (현행 과 같음)
②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u> <u>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u> 의 규격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u>종량제봉투</u>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그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소 지정서를 <u>교부하고</u> , 별지 제4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u>발급하고</u> 

© Ø (처체되 기·)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1. (현행과 같음)
2 <u>발급</u>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판매소의 지정 해제) 
1. ~ 3. (현행과 같음)
4

#### 시 卫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00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단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교통운수과 ☎760-7577, 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사업의 명칭 :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단계)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 사업면적 A=1,173m²
- 시설내역

구 분	부지면적(m²)	구성비(%)	비고
주차장	1,173.0	100.0	

#### 【변경】

- 사업면적 A=1,173 m²
- 시설내역

구 분	부지면적(m²)	구성비(%)	비고
주차장	1,096.76	93.5	
주차장(부대시설)	76.24	6.5	건축물 개축

### ※ 건축물 세부내용

- 건축물 용도 : 주차장(관리사무소) - 건축면적 : 76.24 m² (건폐율 6.5%) - 연 면 적 : 104.62m²(용적률 8.92%)

- 높이/층수 : 7m/2층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 9.25. ○ 준공예정일 : 2019.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 조에 따름.

## [붙임 1]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m¹)	소유자			소유권	! 외의 권	리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1	대	523.1	5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동 ****호	장경*					
1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1	대	523.1	523.1		인천광역시 중구					
2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4	대	10.8	10.8		인천광역시 중구					
3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7	대	23.1	23.1		인천광역시 중구					
4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8	대	0.2	0.2		인천광역시 중구					
5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3	대	91.8	91.8	동구 화수로38, *동***호	정선*		서울 중구 을지로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3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3	대	91.8	91.8		인천광역시 중구					
6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4	대	51.4	51.4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동***호	조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4	대	51.4	51.4		인천광역시 중구					
7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5	대	63.8	63.8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동***호	조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5	대	63.8	63.8		인천광역시 중구					
8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6	대	33.6	33.6	중구 차이나타운로20번길 *	신우*					
0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6	대	33.6	33.6		인천광역시 중구					
9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7	대	6.6	6.6	동구 화수로38, *동***호	정선*		서울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9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7	대	6.6	6.6		인천광역시 중구					
10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8	대	1.4	1.4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동***호	조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0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8	대	1.4	1.4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인천광역시 조그	1-20	대	25.1	25.1		인천광역시 중구	2.0/ 25.1				
11	011	중구 북성동2가		-11	20.1	20.1	중구 차이나타운로20번길 *	신우*	23.1/ 25.1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9	대	25.1	25.1		인천광역시 중구					

					면적	(m²)	소유	자		소유권	외의 권	리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2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31	대	5.0	5.0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8, ***동***호	조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2	변경	북성동2가	1-31	대	5.0	5.0		인천광역시 중구					
13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40	대	3.6	3.6		인천광역시 중구					
14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2-5	대	24.8	24.8		기획재정부					무상 귀속 대상
15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2-20	대	2.7	2.7		인천광역시 중구					
16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2-21	도	239.2	3.8		기획재정부					무상 귀속 대상
17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4	도	12,272.1	101.2		국토교통부					무상 귀속 대상
18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10-1	도	6,651	201.0		국토교통부					무상 귀속 대상
	•	계			20,029.5	1,173.0							

## [붙임 2]

# 수용되거나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소유자		소유권의	1의 권	변리자	
견벤	구분	소재지	지 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ュ
				공장	라멘조, 철판스레트	m²	369.18						
				공장	라멘조, 스라브	m²	116.99						
				공장	라멘조, 스라브	m²	116.99						
		이 뒤 짜여 괴		옥탑	라멘조, 스라브	m²	5.76	인천광역시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1	대문	철재	m	4.4	남동구 담방로 22-16 ***동 ****호	장경*				
		7/8/8/2/1		대문	철재	m	2.5						
				화단	큰크리트	식	1						
				사철나무		주	1						
1				재고품		식	1						
1		인천광역시		공장	라멘조, 철판스레트	m²	369.18						
				공장	라멘조, 스라브	m²	116.99	-	인천 광역시 중구				
				공장	라멘조, 스라브	m²	116.99						
				옥탑	라멘조, 스라브	m²	5.76						
	변경	인선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1	대문	철재	m	4.4						
		7/8/8/2/1		대문	철재	m	2.5		3.1				
				화단	큰크리트	식	1						
				사철나무		주	1						
				재고품		식	1						
				상가	시멘벽돌, 스라브	m²	31.66						
				주택 (2층)	시멘벽돌, 스레트	m²	15.75						
	당초	인천광역시 즈그	1-23	주택 (1층)	블럭, 스레트	m²	49.68	동구 화수로	정선*	서울 중구 을지로 79	중소 기어	근저당권	
	82	중구 북성동2가	1-23	대문	철재	m	1	38, *동***호	'8'শ*	을지로 79	은행	도시장면	
				대문	철재	m	2.3						
2				차양		식	1						
_				상가	시멘벽돌, 스라브	m²	31.66						
				주택 (2층)	시멘벽돌, 스레트	m²	15.75						
	변경	인천광역시 주구	1-23	주택 (1층)	블럭, 스레트	m²	49.68		인천 과연시				
	4.0	중구 북성동2가	1 20	대문	철재	m	1		광역시 중구				
				대문	철재	m	2.3						
				차양		식	1						

								소유자		소유권의	리의 권	<sup>1</sup> 리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判。
				영업보상	대광전업사	식	1						
				간판		식	1						
	rl>	인천광역시 공기	1 00	호이스트	5톤	식	1	인천 동구	ы. 日 .				
	당 소	중구 북성동2가	1-23	호이스트	1톤	식	1	화수로 ***동***호	박봉*				
				기타기계		식	1						
0				중고부품		식	1						
3				영업보상	대광전업사	식	1						Г
				간판		식	1						
	wi z	인천광역시 		호이스트	5톤	식	1		인천				
	면 경	중구 북성동2가	1-23	호이스트	1톤	식	1		광역시 중구				
				기타기계		식	1						
				중고부품		식	1						
				상가	시멘벽돌, 스라브	m²	24.54						
				주택	시멘벽돌, 스레트	m	11.58	이 차 주구					
4	당 초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6	주택	샌드위치판넬	m	26.23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20번길 *	신우*				
		7 6 6 2/1		대문	철재	m	1.0	- 2012					
				대문	철재	m	2.3						
				상가	시멘벽돌, 스라브	m²	24.54						
		A1 -1 -1 A1 A1		주택	시멘벽돌, 스레트	m	11.58		A1 -1				
4	변 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6	주택	샌드위치판넬	m	26.23		인천 광역시 중구				
		予分を2/F		대문	철재	m	1.0		ਰਾ				
				대문	철재	m	2.3						
				창고	샌드위치판넬	m²	21.20						
				대문	철재	m	4.5						
				담장	샌드위치판넬	m	34.0						
				바닥	콘크리트	m²	121						
5	당 초	북성동2가	1-24		세명스틸	식	1	북성동2가 * - **	김명*				
				동력 및 설비	5kw	식	1						
				인터넷 설비		식	1						
				세콤	cctv2대	식	1						
				기계 및 잡자재		식	1						

								소유자		소유권의	리의 군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창고	샌드위치판넬	m²	21.20										
				대문	철재	m	4.5										
				담장	샌드위치판넬	m	34.0										
				바닥	콘크리트	m²	121		인천 광역시 중구								
5	변 경	북성동2가	1-24	영업보상	세명스틸	식	1										
				동력 및 설비	5kw	식	1		0 1								
								인터넷 설비		식	1						
				세콤	cctv2대	식	1										
				기계 및 잡자재		식	1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0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7, 기반시설과 ☎760-8955)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O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43-1 ~ 운북동 168-25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652호선)

※ 중로1류652호선은 소로1-3호선의 폭원확장에 따라 변경된 노선명칭임

○ 사업의 명칭: 영종 미개발지역 소로1-3호선 도로개설공사(2구간)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 면적: 9,898㎡ ○ 규모: 연장(L)=535m, 폭원(B)=11.5m

#### 【변경】

○ 면적: 9,884.7㎡ ○ 규모: 연장(L)=535m, 폭원(B)=11.5m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O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착수예정일: 2014. 6. 2. ○ 준공예정일: 2019. 6. 30.

### 【변경】

- 착수예정일: 2014. 6. 2. 준공예정일: 2021.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9조에 따름

### [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4차)

○ 사업명: 영종 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2구간)

	]구분 -		지번	지목	대장 면적 (m')	편입 면적 (m')	소	: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연반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_	당초	중구 운북동	142-14	임	11	11	국 (건설교통부)				"	
1	변경	중구 우북동	142-14	임	11	11	국 (국토교통부)					
0	당초	중구 오부도	142-1	전	9	9	인천과역시 중구					
2	변경	등구 운북동	142-1	전	9	9	인천광역시 중구					
0	당초	중구 으부도	142-2	전	146	146	인천광역시   중구					
3	변경	중士 오분도	142-2	전	146	146	인천광역시 중구					
_	당초	중구 운북동 중구 운북동	143-27	답	127	127	인천광역시   중구					
4	변경	중구 운북동	143-27	답	127	127	인천광역시 중구					
_	당초	중구 운북동	142-12	전	149	149	국 (건설교 <del>통부</del> )					
5	변경	중구 운북동	142-12	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중구 으부도	143-21	답	23	23	국 (건설교통부)					
6	변경	중구 우북동	143-21	답	19.7	19.7	국 (국토교통부)					
	당초	중구 운북동	143-28	답	409	409	인천광역시 중구					
7	변경	중구 운북동	143-28	답	409	409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42-11	도	705	1	국 (건설교통부)					
8	변경	중구 운북동	142-11	도	898.1	1	국 (국토교통부)					
	당초	중구 운북동	142-5	철	9,598	1,065	국 (건설교통부)					
9	변경	중구 우북동	142-5	철	8,678	1,065	국 (국토교통부)					
-	당초	중구으부도	143-5	도	617	244	국 (건설교통부)					
10	변경	중 무분동	143-5	도	617	244	국 (국토교통부)					
	당초	오부도	143-12	답	843	422	국 (건설교통부)					
11	변경	중구 운북동	143-12	답	843	422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공분동	143-13	답	212	79	국 (건설교통부)					
12	변경	중구 운북동	143-13	답	212	79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중구 우분동	143-9	도	641	153	국 (건설교통부)					
13	변경	중구 운북동	143-9	도	641	153	국 (국토교통부)					
1.	당초	중구 운북동	5	도	1,841	683	국 (건설교통부)					
14	변경	중구 운북동	5	도	1,721	683	국 (국토교통부)					
	당초	중구 오분도	1167-3	도	1,390	116	국 (건설교통부)					
15	변경	중구 우북도	1167-3	도	377	116	국 (국토교통부)					
1.7	당초	중구 운북동	13-55	도	261	116	국 (건설교통부)					
16	변경	중구 운북동	13-55	도	261	116	국 (국토교통부)					
		470	1	1	I .		[ ] Jane ( ] /	1	ı			

연변	구 <del>분</del>	주소	지번	지목	대장 H 면적 (m')	편입 면적 (m')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의 권리	리	
							성명	주	소	성	명	2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工
17	당초	중구 운북동	13-22	도	92	22	국 (건설교통부)								
	변경	중구 운북동	13-22	도	92	22	국 (국토교통부)								
18	당초	중구 운북동	13-54	도	362	6	국 (건설교통부)								
	변경	중구 운북동	13-54	도	362	6	국 (국토교통부)								Т
	당초	중구 운북동	13-94	답	1	1	인천광역시 중구								T
19	변경	중구 운북동	13-94	답	1	1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3-100	전	146	146	인천광역시 중구								
20	당초 변경	중구 운북동	13-100	전	146	146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3-93	답	84	84	인천광역시 중구								Т
21	변경	중구 운북동	13-93	답	84	84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3-87	답	139	139	인천광역시 중구								T
22	변경	중구 운북동	13-87	답	139	139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del></del> 운북동	13-97	대	3	3	인천광역시 중구								
23	변경	운북동	13-97	대	3	3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운북동	13-98	대	6	6	인천광역시 중구								
24	변경	운북동	13-98	대	6	6	인천광역시 중구								T
	당초	중구 운북동	13-92	답	281	281	인천광역시 중구								T
25	변경	중구 운북동 중구 운북동	13-92	답	281	281	인천광역시 중구								Т
	당초	중구 운북동	13-91	답	426	426	인천광역시 중구								
26	변경	중구 운북동	13-91	답	426	426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3-90	답	3	3	인천광역시 중구								
27	변경	중구 운북동	13-90	답	3	3	인천광역시 중구								T
	당초	중구 운북동	13-88	답	365	365	인천광역시 중구								
28	변경	중구 운북동	13-88	답	365	365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3-84	답	1,182		인천광역시 중구								
29	변경	중구 운북동	13-84	답	1,182	1,182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3-99	답	236	236	인천광역시 중구								
30	변경		13-99	답	236	236	인천광역시 중구								
0.1	당초	중구 운북동	1167-6	도	1,354	60	국 (농림수산 식품부)								
31	변경	중구 운북동	1167-32	도	59	59	국 (농림축산 식품부)								
0.0	당초	중구 운북동	168-99	대	33	33	인천광역시    중구								
32	변경	중구 운북동	168-99	대	33	33	인천광역시 중구								
0.5	당초	중구 운북동	168-47	답	91	91	인천광역시    주구								
33	변경	중구 운북동	168-47	답	91	91	0 년 인천광역시 중구								T

	] 구 <del>분</del>	주소	지번	지목	대장 - 면적 (m')	편입 면적 (m')	소	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연번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34	당초	중구 운북동	168-109	답	9	9	인천광역시 중구					
	변경	중구 운북동	168-109	답	9	9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중구 운북동	168-11	답	5,831		장*주 외 1인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28번길	중구농업 협동조합	중구 운중로22	근저당권 지상권	
35	변경	중구 운북동	168-11	답	5,831	1,153	장*주(1/2)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28번길	등 전 등 조합 등 조합 등 조합 등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33-3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23-1	근저당권 지상권	
		正当否					장*호(1/2)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72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11(염리동 168-9)(인천중부지사)	압류	
36	당초	중구 운북동	168-108	답	438	438	인천광역시 중구					
30	변경	중구 운북동	168-108	답	438	438	인천광역시 중구					
37	당초	중구 운북동	168-101	답	423	423	인천광역시 중구					
37	변경	중구 운북동	168-101	답	423	423	인천광역시 중구					
38	당초	중구 운북동	168-103	답	458	458	인천광역시 중구					
30	변경	중구 운북동	168-103	답	458	458	인천광역시 중구					
39	당초	중구 운북동	168-106	전	573	573	인천광역시 중구					
39	변경	중구 운북동	168-106	전	573	573	인천광역시 중구					
40	당초	중구 운북동	168-104	전	7	7	인천광역시 중구					
40	변경	중구 운북동	168-104	전	7	7	인천광역시 중구					

#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9-882호

### 공 인 등 록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동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내역

공 인 명	등 록 사 유	전자이 화	미지 일
중구보건소장인	잠복결핵감염 검진관련 증명서 발급에 따른 「질병 관리본부 결핵통합관리 시스템」에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개시일 : 2019. 7. 3.